

서울특별시립도서관 및 평생학습관 사용자 징수 등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

1. 제안경위

- 동 개정조례안은 2009. 1. 21. 서울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09. 1. 29.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.

2. 제안이유

- 도서관 및 평생학습관의 지역적·기관별 특색을 반영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개설하여 무료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, 강습·교육 참여자 중 저소득자, 장애인, 노인 및 국가보훈대상자 등에게 수강료 감면 혜택을 부여하여 평생학습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함.

3. 근거법규

- 「도서관법」 제33조
- 「지방자치법」 제136조 및 제139조

4. 주요내용

- 가. 연체료를 납부하지 않은 자의 대출정지 기간을 1인당 1년 이내로 명시함(안 제2조의2 제2항).
- 나. 관장이 지역주민의 평생교육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무료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함(안 제8조).
- 다. 강습·교육 참여자 중 저소득자, 국가보훈대상자, 장애인, 노인 등의 수강료 감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(안 제9조).

5. 검토의견

- 동 개정조례안은 연체료를 납부하지 않은 자의 대출정지 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, 평생교육프로그램을 무료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, 저소득자, 국가보훈대상자, 장애인, 노인 등의 수강료 감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기 위한 것으로,
- 안 제2조의2제2항의 연체료와 관련하여, '대출정지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.'라는 현행조례의 규정이 '1책당 연체일수 만큼 대출을 일시 정지하되'라는 동 조항의 전반부로 인해 대출정지 기간이 1책을 기준으로 정해져 있는 것으로 오해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.
- 즉 대출자의 경우 1인당 3권을 대출할 수 있음에 따라 연체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대출정지 기간을 3년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므로 대출정지 기간 앞에 1인당이라고 명시함으로써 대출정지 기간이 1책을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닌 1인을 기준으로 한 것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대출자의 오해를 해소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라고 할 수 있음.
- 안 제8조 무료프로그램의 운영과 관련하여, 현재 도서관 및 평생학습관에서는 일부 무료프로그램이 운영되고는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고 예산상의 문제로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지 못하고 있으므로, 동 조례안에 무료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신규 우수 프로그램의 개설과 소외계층 프로그램의 운영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.
- 다만 '지역주민에게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프로그램'이라는 개념이 매우 불명확하여 무료프로그램의 개설이 관장의 주관에 좌우될 가능성이 있고, 무분별한 프로그램의 신설이나 인기에 편승해서 각 자치구청 및 문화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평생교육프로그램과 중복되는 프로그램이 개설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임.

- 안 제9조 수강료 감면과 관련하여, 「장애인복지법」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, 「노인복지법」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, 「국가보훈기본법」 제5조,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6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6조에는 장애인, 노인, 국가보훈대상자 등 소외계층의 시설 이용에 대한 감면 규정이 있고, 국내외적 경제위기로 인해 저소득층의 가계가 매우 침체되어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이들 소외계층에 대한 수강료 감면 규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.
- 다만 현재 도서관 및 평생교육관에서 운영중인 평생교육프로그램에 소외계층의 참여도가 극히 낮은 것은 단순히 수강료의 문제뿐만 아니라 평생교육에 대한 인식 및 접근성에서 비롯된 부분도 적지 않으므로 수강료 감면과 더불어 소외계층이 평생교육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,
- 또한 부족한 예산 내에서 최대의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대상자별 수강료 감면비율을 차등화하는 등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.
- 결론적으로, 동 조례안은 도서 반납 연체에 대한 미흡한 규정을 보완함으로써 도서대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, 무료프로그램의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평생교육의 저변화 및 활성화에 기여하며, 수강료 감면 규정의 신설을 통해 소외계층의 평생교육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등 바람직한 조치라고 판단됨.

(다음 페이지에 계속)

□ 참고자료

< 2008년도 대출회원증 발급 현황 >

기관명	총회원수				신규발급				재발급				재발급시 수수료부과
	성인	청소년	어린이	계	성인	청소년	어린이	계	성인	청소년	어린이	계	
고 덕	47,231	29,625	9,007	85,863	2,966	485	1,443	4,894	1,183	225	304	1,712	
노 율	66,248	19,041	9,873	95,162	5,377	930	1,262	7,571	1,933	277	105	2,315	
마 포	67,737	11,709	31,321	110,767	7,222	1,189	1,819	10,230	1,345	268	724	2,337	
영등포	27,200	10,931	4,699	42,830	2,143	64	737	2,944	609	38	325	972	
강 남	41,424	6,787	4,608	52,819	2,974	240	523	3,737	484	62	122	668	○
강 동	35,996	16,908	16,157	69,061	2,785	342	835	3,962	1,023	250	324	1,597	○
강 서	61,333	8,961	8,356	78,650	4,910	601	1,083	6,594	913	112	178	1,203	○
개 포	68,444	12,197	17,652	98,293	5,503	361	1,072	6,936	804	266	273	1,343	
고 척	42,982	9,121	15,849	67,952	2,625	520	1,305	4,450	1,126	282	327	1,735	
구 로	29,651	2,657	18,106	50,414	2,231	220	1,136	3,587	706	69	36	811	
남 산	66,415	22,577		88,992	7,950	664		8,614	1,688			1,688	
도 봉	67,387	16,840	18,769	102,996	2,988	747	1,250	4,985	1,033	258	535	1,826	
동대문	81,298	7,709	5,772	94,779	3,437	251	561	4,249	1,113		60	1,173	
동 작	57,221	6,358	27,743	91,322	7,417	1,285	1,978	10,680	1,113	193	211	1,516	
서대문	42,573	18,240	7,241	68,054	3,402	420	893	4,715	1,021	133	249	1,403	
송 파	145,186	31,869	61,741	238,796	7,584	1,664	2,937	12,185	2,683	505	416	3,604	
양 천	99,396	24,849	30,815	155,060	6,585	1,161	2,821	10,567	1,762	577	524	2,863	○
어린이	41,589	4,931	31,174	77,694	2,970	95	2,483	5,548	102	11	108	221	
용 산	34,001	4,277	6,323	44,601	3,278	268	1,191	4,737	316	46	215	577	
정 독	94,115	14,606	11,260	119,981	8,458	920	1,375	10,753	1,407	325	974	2,706	
종 로	31,631	1,653	0	33,284	3,492	618	0	4,110	746	132	0	878	
계	1,249,058	281,846	336,466	1,867,370	96,297	13,045	26,704	136,048	23,110	4,029	6,010	33,148	

< 2008년도 대출도서 반납 연체 현황 >

기관명	대출권수 (2008)	15일~30일	31일~60일	61일~180 일	181일~365 일	365일 이상	계
고 덕	282,612	82	92	33	22	0	229
노 원	395,145	117	279	202	246	4	848
마 포	490,979	188	360	195	343	13	1,099
영등포	224,923	30	60	16	35	0	141
강 남	181,060	106	135	141	163	10	555
강 동	262,286	97	244	39	72	1	453
강 서	281,149	105	156	27	40	1	329
개 포	309,980	188	246	53	38	1	526
고 척	328,191	128	364	187	160	15	854
구 로	186,802	302	130	48	55	9	544
남 산	238,090	225	242	77	63	0	607
도 봉	340,392	134	216	68	106	1	525
동대문	177,746	88	558	57	40	3	746
동 작	160,242	99	152	78	135	2	466
서대문	247,875	120	131	80	81	0	563
송 파	567,347	250	467	167	173	5	1,062
양 천	492,658	215	292	168	197	13	885
어린이	484,779	141	82	33	5	0	261
용 산	301,686	170	58	215	108	8	559
정 독	334,671	190	218	80	77	8	573
종 로	172,332	71	44	44	14	0	173
계	6,460,945	3,046	4,526	2,008	2,173	94	11,998

< 2008년도 대출도서 반납 연체자 관리비 현황 >

기관명	전화료	문자전송	우편요금	방문회수	계	비고
고 덕	63	437	201		701	
노 원	58	2,522	46		2,626	
마 포	199	603	41	18	861	
영 등 포	277	829	32		1,138	
강 남	310	172	19		500	
강 동	1,319	228	45		1,592	
강 서	847	590	53		1,490	
개 포	416	212	127		755	
고 척	141	61	22		224	
구 로	1,713	296	87		2,096	
남 산	538	1,058	206	100	1,902	
도 봉	152	548	89	30	819	
동 대 문	134	181	179		494	
동 작	235	1,680	35	20	1,970	
서 대 문	776	631	132		1,539	
송 파	2,490	3,179	286		5,955	
양 천	581	303	287		1,171	
어 린 이	692	285	94		1,071	
용 산	67	356	125		548	
정 독	277	1,600	160		2,037	
종 로	556	111	22		688	
계	11,840	15,881	2,287	168	30,177	

(다음 페이지에 계속)